

국제우편 탈락품 공고

2019년 11월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우편물 취급중 발견된 수취인 또는 발송인을 확인할 수 없는 이탈품 및 기표지 탈락 우편물을 국제우편규정 제38조 제1항에 의거 게시하오니 해당되는 우편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는 아래 제시 기간 내에 교부청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☐ 건 수 : 총 49건
- ☐ 공 고 기 간 : 2019.12.02. ~ 2020.01.01. (1개월간)
- ☐ 교부청구기간 : 2019.12.02. ~ 2020.03.01. (3개월간)
- ☐ 관련문의부서 : 국제우편물류센터 지원과 경영지도계
(☎ 032-745-9852)

상기 교부 청구기간내 청구가 없는 탈락품은 우편법 제36조 및 국제우편규정 제38조, 제39조에 의거하여 보관기간 경과시점인 2020년 3월중 폐기 또는 유가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.
(유가물로 판정된 탈락품은 해당규정에 의하여 별도 처리됨)

2019. 12. 2.

국 제 우 편 물 류 센 터 장